

변경 자산보관계약서(현금 및 증권)

본 변경 자산보관계약서(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는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24년 04월 01일 체결되었다.

위탁자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빌딩)

수탁자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전 문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존 자산보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및 증권의 위탁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를 통하여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고자 양 당사자 간 2021년 04월 12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이하 “기존 자산보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변경내용)

조항	
제12조 (보수) 2항	(변경 전) 보수는 매 결산기마다 금 오백만원(W5,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연간 환산시 금 이천만원(W2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기본 수수료”)을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수수료지급 기간이 어느 결산기의 초일 이후에 개시하거나 어느 결산기 말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당해 결산기의 총일수에 대하여 실제로 수탁자가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u>보수는 매 결산기마다 금 팔백칠십오만원(W8,750,000)(부가가치세 별도) (연간 환산시 금 삼천오백만원(W35,000,000) 부가가치세 별</u>



	<p><u>도) (이하 “기본 수수료”)을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본 항에서 정하는 보수 금액은 2024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u> 다만, 수수료지급 기간이 어느 결산기의 초일 이후에 개시하거나 어느 결산기 말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당해 결산기의 총일수에 대하여 실제로 수탁자가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제20조(계약기간)	<p>(변경 전)</p> <p>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3년, 위탁자의 청산종결등기일 또는 본 계약 제 22조에 따른 중도 해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p>
	<p>(변경 후)</p> <p>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해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p>

제2조 기존 자산보관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동 시점부터 기존 자산보관계약 제12조 제2항 및 제20조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에서 변경한 내용으로 대체된다. 다만,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은 기존 자산보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자산보관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하고, 기존 자산보관계약과 본 계약이 상호 상충 또는 모순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기존 자산보관계약에 우선한다.



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하고, 각 당사자가 원본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위탁자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빌딩)

법인이사

에스케이리츠운용 주식회사



수탁자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대표이사

전 우 종

